## 1. 개정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내 의견조회 및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비대면진료 중개업자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한다.

1.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의료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별표 제1호가목1) 중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을 “등록취소, 의료기관 폐쇄 또는 신고수리 취소인”으로,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처분”을 “등록취소, 의료기관 폐쇄 또는 신고수리 취소 처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감경대상 | 감경기준 | | |
|---|---|---|---|
| |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 면허취소 | 허가취소ㆍ등록취소ㆍ신고수리 취소 또는 폐쇄 |

별표 제2호나목에 7)부터 29)까지를 13)부터 3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부터 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7)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8)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의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9)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10)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11) 법 제3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12) 법 제3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별표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행정처분기준 |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신 | 법 제64조제4항제1호 | 신고수리 취소 |

| | | |
|---|---|---|
| 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한 경우 | | |
| 2) 법 제34조의8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3) 법 제3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4)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법 제64조제4항제2호 |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br>·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br>·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 5) 법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 법 제64조제4항제3호 | · 1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br>· 2차 위반 : 영업정지 12개월<br>· 3차 위반 : 신고수리 취소 |
| 6) 법 제34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7) 법 제34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 | 시정명령 |
|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제4항제4호 | |
| 가) 법 제34조의8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br>·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br>·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 나) 법 제3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br>·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br>·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 다) 법 제34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br>·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br>· 3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 | | |
|---|---|---|
| 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br>라) 법 제34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br>·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br>·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적용 범위) ---------- 의료인・간호조무사・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② (생략)<br><신 설> |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한다.<br>1.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br>2. 「의료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보건복지부장관 |